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식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1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노식래 의원(1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중무,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상훈,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진철,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32명)

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은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임. 다만,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가능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p> <p>①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p> <p>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인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30조(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른 "<u>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u>"은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p>

문서번호

202108050000002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노식래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8.05

회신일 : 2021.08.06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조제3항 신설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의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매입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안 제30조제3항 신설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의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매입함에 따라 향후 매입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공공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도 미확정 상태로 매입규모 및 매입시기, 매입가격을 파악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